

민원 예방 체크리스트

1. 조사 착수 단계 — 기대치 관리

점검 항목	확인
손해사정 역할 및 범위 설명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결정 권한 구조 안내	<input type="checkbox"/>
조사 절차 및 예상 일정 안내	<input type="checkbox"/>
필요자료 요청 명확 전달	<input type="checkbox"/>
고객 문의 창구 안내	<input type="checkbox"/>

민원 발생률에 가장 큰 영향 단계

2. 조사 수행 단계 — 소통 관리

점검 항목	확인
진행사항 정기 안내	<input type="checkbox"/>
주요 조사내용 공유	<input type="checkbox"/>
고객 문의 신속 대응	<input type="checkbox"/>
현장 응대 태도 점검	<input type="checkbox"/>
충돌 상황 기록 유지	<input type="checkbox"/>

"방치 인식" 예방 핵심

3. 손해액 산정 단계 — 투명성 확보

점검 항목	확인
산정 기준 설명	<input type="checkbox"/>
근거 자료 확보	<input type="checkbox"/>
금액 결정 과정 설명	<input type="checkbox"/>
이건 발생 시 기록	<input type="checkbox"/>

4. 면책·분쟁 가능 사건 — 집중 관리

점검 항목	확인
약관 근거 명확 제시	<input type="checkbox"/>
판단 논리 설명	<input type="checkbox"/>
지점장 사전 보고	<input type="checkbox"/>
고객 반응 기록	<input type="checkbox"/>

5. 종결 단계 — 수용성 확보

점검 항목	확인
결과 사전 설명	<input type="checkbox"/>
이해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질의 응답 진행	<input type="checkbox"/>
이의 절차 안내	<input type="checkbox"/>

6. 고위험 사건 관리 체크

해당 시	확인
고객 손해	<input type="checkbox"/>
면책 가능	<input type="checkbox"/>
고객 강한 불만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 충돌	<input type="checkbox"/>
현장갈등 발생	<input type="checkbox"/>

실행조치	확인
관리자 보고	<input type="checkbox"/>
기록강화	<input type="checkbox"/>
커뮤니케이션 확대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 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 지급 보험금 제도

-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 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① 상기 (1)의 ①, ②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상기 (1)의 ③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본 건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6조의2,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보증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상기 ①~③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⑤ 상기 ①~③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 보험종목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단,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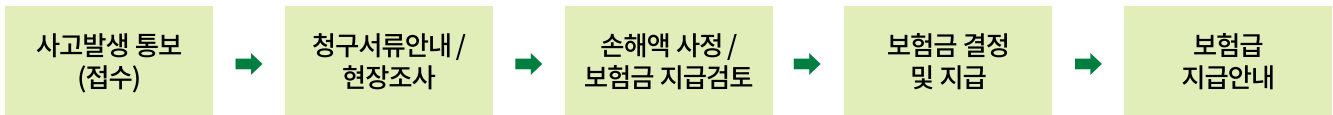
8.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9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 1588-0100

보험금 지급절차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표번호 : 1588-0100 / www.idbins.com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SMS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시 SMS 및 제공하신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이 통보됩니다.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구상관련 업무, 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 비율분쟁 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 및 별도 보관)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p>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민감정보	<p>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p>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p>
 신용거래정보	<p>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p>
	<p>위 <u>개인(신용)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2-1. 국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및 계약관리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등)
---------------	--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p>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요율산출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재(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업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등 - 자동차보험에 한함)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도로교통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포함)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 내용 관련 정보 제공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관련 위탁업무 수행
<p>보유 및 이용기간</p>	<p>○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p>

* 본 동의서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국외 제3자(본점 및 계열사 포함)에 민감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정보(고유식별정보는 제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p> 고유식별정보</p>	<p>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p> 민감정보</p>	<p>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p> 개인(신용)정보</p> <p> 일반개인정보</p> <p> 신용거래정보</p>	<p>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p> <p>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p> <p>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idbins.com)에서 확인 가능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2-2.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 국외 재보험사 (재(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외 재보험사로 당사 홈페이지 www.idbins.com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
제공받는 국가	○ 국외 재보험사의 소재 국가(당사 홈페이지 www.idbins.com에서 확인 가능)
제공시기	○ 재(재)보험금 청구 시점
제공방법	○ 온라인 전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재)보험금 지급·심사 ※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를 위해 국외 재보험사로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1개사 이상의 국외 재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를 위해 국외 재보험사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당사(원수보험사)가 국내 소재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동의를 징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국외 재보험사의 구체적인 명칭·소재국·연락처는 당사 홈페이지 www.idb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 동의서 “동의하지 않음”란을 선택하거나 당사 고객센터(1588-0100)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연령, 성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증권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보험금 정보(사고정보, 지급 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교통사고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 ○ 보험요율산출기관·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조회동의의 효력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위탁판매 위임서

- 잔존물 위탁판매 업무 안내 -

1. 경매 진행에 따라 발생한 잔매 진행 수수료 및 위임 물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업무비용은 해당 보증사와 (주)리앤씨 간의 협약에 따라 산정 합니다.
2. (주)리앤씨는 위임 물품의 경매 완료 및 해당 물품 반출 후 잔존물 경매노출가에서 1회의 수수료 및 제반업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위임자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수수료 및 제반업무 비용에 해당하진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임인의 E-mail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증서별 업무처리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물품의 매각에 따라 보증사 및 손해사정사가 매각 물품의 감정평가 산정시 관련 매출 추가 가치세 및 수수료, 제반업무비용은 제외하므로 경매 관련 비용 부담에 따른 실제 미결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권으로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잔존물의 객관적 평가와 가치판단을 위해 경매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험사잔존물 경매업무 대행사 (주)리앤씨를 수임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위임합니다.

- 아 래 -

1. 위임인은 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인에게 잔존물 처리를 위한 위탁판매에 동의합니다.
2. 위임인은 수임인의 원활한 매각진행을 위해 잔존물 보존 및 입찰예정자의 실물확인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물확인에 동의합니다.
3. 낙찰 이후 낙찰대금이 납입되면 잔존물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위임자는 낙찰자의 정유이권 및 양도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01 년 월 일

위 임 인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하에 매각업무를 위임합니다.)	
물품명 및 수량	1. _____
	2. _____
	3. _____
성 명	_____ (인/서명)
주민(사업자)번호	_____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E - mail 및 FAX	E-MAIL : _____ FAX : _____
관 계	_____

필요서류 : 위임인 등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잔존물 위탁판매 업무 등의 잔존물에 대한 인터넷 경매(위탁판매)의 진행 잔존물 정보 제공 위탁 수수료 등 제반업무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잔존물 판매대금의 송금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정보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전자우편, 사업자등록증사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서명 : _____

(주) 리 앤 씨



갑 (피해자) 상호(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을 (피보험자) 상호(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사고 경위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2. 합의 내용

-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자의의사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을"은 "갑"에게 위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은 _____ 원이며, "갑"은 향후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합의가 최종 합의임을 서로 확인합니다.
- 위 사고에 관하여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각 보험사는 위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에 의거 해당 책임분을 지급합니다.
- 위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을"의 보험자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합니다.
다만 "을"의 자기부담금 _____ 원은 "을"이 "갑"에게 직접 입금합니다.

내용 및 조건

20 년 월 일

"갑"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인)

"을"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 : (인)

3. 지급 방법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 확인서 ◆

1 작성자 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피보험자와의 관계 : 본인 타인 ()

신분증 촬영란

신분증 없을 경우 작성 사진 추가

상기 작성자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 발생한 _____ 사고로 인하여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며, 본 확인서는 해당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에 대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 사실 관계

사고번호		증권번호	
보상담보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당사에 청구한 보험사고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당사가 확인한 실제 보험사고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상기 내용을 알선, 공모한 제 3자가 있는지요? 예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 v 라고 답변시) 제 3자와는 어떤 관계인지요? _____ 예) 수리업체, 관리소, 모집인, 기타 등

■ 자인 진술 확인 (※ 밑줄부분은 반드시 진술자가 직접 작성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작성자는 확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보험금 심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상기 작성자는 실제 사고 내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상기 작성자는 본 허위청구 사실로 인해 이후 보험 계약시 **'인수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상기 작성자는 위 사실관계가 보험약관상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에 해당됨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으며, 위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동의**합니다.

* 당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발생시 아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은행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상기 내용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작성자 :

(인)

[MR사고 CHECK LIST]

구분	항목	점검결과	현장조사내용
계 약 사 항	*근접사고	유 / 무	
	*실호 후 부활	유 / 무	
	*사고 전 배서	유 / 무	
	중복/초과보험	유 / 무	
	인수유의 업종	유 / 무	
	과거사고	유 / 무	
	지발적 계약	유 / 무	
조 사 사 항	*인화물질 발견	유 / 무	
	*발화지 다수	유 / 무	
	*시장품 약성재고	유 / 무	
	*부채(월급체불) 과다 매출하락	유 / 무	
	*행적 의심	유 / 무	
	*사고이전 보험 문의	유 / 무	
	*발회원 없는 곳에서 발화	유 / 무	
	작업종료 후 발생	유 / 무	
	심야시간 발생	유 / 무	
	사고발생 전 목적물 이동	유 / 무	
	명도 소송	유 / 무	
	진술 반복	유 / 무	
	무인경비 해제 후 사고	유 / 무	
	건물 철거 예정	유 / 무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 / 무	
	이전 계획 여부	유 / 무	
	타사 계약 은닉	유 / 무	
	적자 운영	유 / 무	
	시건장치 여부	유 / 무	
	허위 과다 청구	유 / 무	

※ * MR조사 대상 조기 확정 및 조사 진행하기 위한 MR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 선정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 자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및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동의서

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 안내

(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2) 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 ① 상기(1)의 ①, ②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상기(1)의 ③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3)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등이 본 건 안내 및 동의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4)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6조의2,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동의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0 년 월 일

작성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1. 위임사항

본인은 * 해당항목에 V 표시(사망보험금 청구 시에는 모두 V 표시)

- 피보험자 _____의 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고와 관련하여
- 망 인 _____의 사망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이 보유한 * 해당항목에 V 표시

- 일체의 계약에 대한
- 일부의 계약에 대한

보험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보험금 및 보험료 환급금 등 상기 계약으로 인한 본인의 권리 일체를 아래 위임받는 분에게 위임합니다.

- 금번 사고와 관련 향후 추가청구 보험금 포함하여 일체를 위임
-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금번 청구 1회에 한해 위임

작성일자 : 년 월 일

2. 위임하는 분

성명	인감날인/본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위임하는 분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바랍니다.

3. 위임받는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보험자와 관계	
수령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실명확인	확인자 :	확인일자 :	책임자 : (인)

* 실명확인란은 보험회사 직원 작성 사항임

4. 확인사항

- 상기 업무 처리를 위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는 위임하는 분, 위임받는 분 모두 개별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민감정보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